

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대전지방검찰청
홍성지청**

공보담당관 지정장 이용

전화 041-640-4301 / 팩스 031-640-4216

**보도자료
2019. 1. 31.(목)**

자료문의 : 부장검사실
전화번호 : 041-640-4302
주책임자 : 부장검사 박광현

제 목

**서민생활 침해하는 사기성 유사수신행위
자행한 전국적 사기 조직 적발**

- 대전지검 홍성지청(지청장 이용)은 인도네시아 목재수출·건설 등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칭하면서 2016.경부터 2018.경까지 전국적으로 투자금 합계 약 28억원을 모집한 일당 8명을 적발하여 총책 A 등 핵심 공범 5명을 구속 기소, 통장 양도 사범 등 가담자 2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고, 1명을 지명수배하였음
- 본 사건은 전자화 시대의 주식발행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, 주식발행·유통에 문외한인 일반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가장하여 가상 주식을 전산상 발행하고, 이를 빌미로 사기성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한 금융경제범죄 사건임
- 휴대폰 포렌식, 광범위한 계좌추적, 교도소 녹취파일 분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불법 유사수신포진 범행의 전모를 밝힘
-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앞으로도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포진 사기범죄 등 서민 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총책 피고인 A 등 총 8명

※ 별지 '각 피고인의 범죄사실' 참조

2 주요 수사 경과

- 2018. 8. 1. 관리자 D, 지역 모집책 F 고소사건(1억 사기 등) 송치
- 2018. 8.~12. 계좌추적 4회, 관련자들 수회 조사 등 추가 수사
- 2018. 12. 27. 관리자 D, 지역 모집책 E(추가 인지), F 각 구속
- 2019. 1. 2. 업체 부산센터 사무실 및 관리자 D 주거지 압수·수색
- 2019. 1. 10. 모집 총책 C, 지역 모집책 G 각 인지
- 2019. 1. 14. 피고인 D, E, F 각 구속 기소, G 불구속 기소
- 2019. 1. 21. 총책 A, 전산실장 B, 통장양도사범 H 각 인지
- 2019. 1. 23. 총책 A, 전산실장 B 각 구속
- 2019. 1. 30. 피고인 A, B 구속 기소, H 불구속 기소, C 기소중지

3 수사 결과 및 의의

[참고] 사건의 개요도




1. 범행의 방법 및 특징

- 총책 A는 전산실장 B, 모집 총책 C 등과 공모하여, 인도네시아에 제재소를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X에게 일정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고, 위 X 명의로 甲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가 **마치 수익성 높은 목재 수출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**
- A와 B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도록 위 회사에서 전산상 발행하는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**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,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전산상 발행**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였음
- 위 조직원들은 위 회사 발행 가상 주식을 매입하면, 1분기 동안 1주당 가액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고,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주식이 1/2로 액면분할하여 주식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**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**하여 264명으로부터 투자금 28억원을 유치함
- 총책 A 등 위 조직의 간부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, 필리핀 채팅앱을 통한 문자 및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모집책 관리자 및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**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**하였음

2.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한 금융경제사범 엄단

- 본 사건은 전자화 시대의 주식발행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, 주식발행·유통에 문외한인 일반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가장하여 가상 주식을 전산상 발행하고, 이를 빌미로 **사기성 유사수신 행위를 자행한 금융경제범죄 사건**임
- 당초 경찰은 하위 모집책 F 및 관리자 D에 대한 피해자 1명에 대한 1억 원 사기 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, 검찰은 전체 계좌 추적,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, 교도소 녹취파일 확인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**총책 등을 규명**하고, **불법유사수신 조직의 전모를 밝힘**

4 향후 계획

- 저금리 시대에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증식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성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, 이에 대한 **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수신 사기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**임
-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하고, **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**임 

[별지]

피고인들 인적사항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신분	공소사실 요지	비고
1	A (58세)	총책 (동종전력 5회)	B 등과 순차 공모하여, 인도네시아 목재 수출·건설 등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칭하면서 위 업체가 발행한 가상 주식 투자를 빌미로, 각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2016. 8. 30.경부터 2018. 7. 30.경까지 모두 26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약 28억원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음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	2019. 1. 30. 구속 기소
2	B (44세)	전산실장		2019. 1. 30. 구속 기소
3	C (48세)	모집 총책 (동종전력 2회)		2019. 1. 30. 기소중지 (지명수배)
4	D (56세)	모집책 관리자 (동종전력 1회)		2019. 1. 14. 구속 기소
5	E (여 56세)	천안지역 모집책 (동종전력 1회)	A 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, 2016. 12. 2.경부터 2018. 1. 10.경까지 모두 141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 [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	2019. 1. 14. 구속 기소
6	F (여 46세)	보령지역 모집책 (동종 사건 수사중)	A 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, 2016. 12. 6.경부터 2017. 7.경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약 11억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 [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	2019. 1. 14. 구속 기소
7	G (여 62세)	부산지역 모집책	A 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, 2016. 8. 30.경부터 2018. 7. 30.경까지 모두 264회에 걸쳐 합계 약 28억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 [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	2019. 1. 14. 불구속 기소
8	H 40세	대포통장 양도사범	2016. 5.경 유사수신 범행에 활용된 피고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 5매를 양도하였음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	2019. 1. 30. 불구속 기소